분할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

솔루스첨단소재 주식회사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8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물적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로 솔루스바이오텍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솔루스첨단소재 주식회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한 후, 분할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솔루스첨단소재 주식회사는 2021년 10월 1일 이사회 결의로써 상법 제530조의11 및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분할보고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분할의 경과를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분할의 내용

①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바이오 사업부문(단, 화장품 완제 사업은 제외, 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이하 "본건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존속(이하 분할 후의 존속회사를 "분할존속회사")하기로 한다.

②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하며, 분할존속회사는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 분할존속회사 : 솔루스첨단소재 주식회사 (상장법인)
- 분할신설회사 : 솔루스바이오텍 주식회사 (비상장법인)

③ 상법 제530조의3에 따라 분할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고,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분할존속회사도 분할계획서에서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및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다.

④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서, 솔루스첨단소재 주식회사의 자본금, 자본준비금, 발행주식총수 등의 변동은 없다.

2. 분할의 진행 경과

- 2021년 7월 21일 : 분할계획서 작성일
- 2021년 7월 21일 : 이사회 결의일
- 2021년 8월 05일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2021년 8월 31일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21년 8월 31일 ~ 2021년 9월 30일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1년 10월 01일 : 분할기일
- 2021년 10월 01일 :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 2021년 10월 01일 : 분할등기(예정)일

2021년 10월 1일

솔루스첨단소재 주식회사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627

대표이사 서 광 벽